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단1353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유병연

피고(선정 당사자)

B

변론 종결 2020. 10. 30

판결 선고 2021. 1. 15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11,688,272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9. 7.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주시 C 대 307㎡에 관하여,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사이에 2015.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나.선정자 D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5. 5. 22. 접수 제539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I.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5. 1. 19.경 피고(선정당사자,이하 '피고 와라 한다) 에게 5, 000, 000원을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 8%, 계약만료일 2020 . 1. 19.로 하여 대여하였고,2018. 10. 24.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2018.11.13. 피고 B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B 의 채무는 11, 688, 272원 및 그중 5, 000, 000원에 대하여 2019. 7.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3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

나. 피고 B는 2015 . 5. 21. 선정자 D(이하 ' 피고 이이라 한다) 과 사이에 제주시 C 대 30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 5. 22. 피고 D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5 . 5. 22. 접수 제 53906호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사건 토지에는 2014. 7. 23. 채권

최고액24,000,000원,채무자피고B,근저당권자F조합으로된근저당권설정등기가마쳐져있었다가, 2016 . 2. 24. 채무자를 피고 D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2015 . 11. 10.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피고 B 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소유 부동산은 없었다.

라.피고B 는제주지방법원2015하단644파산선고,2015하면641면책사건에서 2016. 11. 10.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2017. 2. 2.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고,2017. 12.5.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졌다.

그 무렵 위 각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양수금 11, 688, 272원 및 그중 5, 000, 000원에 대하여 2019. 7. 4. 부터 다값는 날까지연 34. 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이사건 증여 계약전에 발생한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E로부터 양수한 위채권은 이 사건사해 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 꾸거나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없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2001 . 4. 24. 선고 2000 다 41875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이 사건 토지를 피고 D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은,원고가 2017. 12. 5. 피고 B에 대한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무 렵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사건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9. 7. 30.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갑제 10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 B가 이사건 증여 계약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그 대부분이 배우자인 피고 D과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채무로서 모두

재산 분할의대상이 되는 채무로 보이므로, 피고 B가 피고 D 에게 분할해 줄 재산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B 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비록 협의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미옥

별지